

보도시점 2023. 5. 24.(수) 12:00 (목요일 조간) 배포 2023. 5. 23.(화)

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.

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,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,600여 곳이 있다. 이번 점검은 △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, △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, △시설 설치·운영 신고 여부, △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.

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·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, 4개 항목(수소이온농도(pH), 탁도, 대장균, 유리잔류염소)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,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시키고,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.

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,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(300만원 이하)를 부과할 예정이다.

한편,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·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·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환경부 유튜브 채널*에 게시했다.

* 유튜브(youtube.com)에서 ‘환경부’로 검색 후 시청 가능

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“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”라며, “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·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,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.
 2.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.
 3.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.
 4.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.
 5. 전문용어 설명. 끝.

담당 부서	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상진 (044-201-7001)
		담당자	사무관	허재 회 (044-201-7011)



□ 점검기간

- '23년 6~9월(4개월)

□ 점검대상 선정기준

-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된 시설, 신규 신고시설 등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시설, 기타 현장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
- 다중이용 공공시설·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시설물 위주로 자체 선정

□ 점검기관

- 유역·지방환경청 및 시·도 간 합동 또는 자체 점검

□ 중점 점검사항

-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·운영 신고 여부
 - 시설물 설치·운영 15일 전까지 유역·지방환경청 또는 시·도에 신고
-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준수 여부
 -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
 - 측정항목별(pH, 탁도, 대장균, 유리잔류염소) 수질기준 준수 여부
 - ※ 지도·점검 시 가동 중인 시설은 시료 채취 및 수질분석 실시
-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
 - 수심 30cm 이하 유지, 부유물·침전물 제거 여부
 - 저류조 주 1회 청소하거나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
 -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·소독제 투입 여부
 -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여부 등

□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(물환경보전법 제2조)

- 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

※ 제외되는 시설: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(遊技施設) 또는 유기기구(遊技機具)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

□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('22.9. 기준)

< 유형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현황 >

(단위 : 개소)

구분	운영구분		시설 종류					
	공공	민간*	바닥 분수	벽면분수 (벽천)	일반 분수	물놀이장	실개천	기타**
2,615	1,657	958	1,706	42	36	608	98	125

* 민간 운영시설 : 공동주택, 대규모점포, 관광지, 공원,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된 시설

** 기타 : 연못형, 족욕, 미세기포, 물썰매 등

< 신고 기관별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>

(단위 : 개소)

구분	수경시설 운영 신고 현황(총 2,615)																	
환경청	계	한강청			낙동강청			금강청			영산강청			원주청		대구청		전북청
	87	57			3			17			2			2		4		2
지자체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대전	광주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	2,528	225	69	151	147	57	51	49	64	824	80	89	142	86	104	122	261	7

□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형



바닥분수



벽면분수(벽천)



물놀이장



실개천

1. 수질 기준

□ 측정항목별 수질기준

검 사 항 목	수 질 기 준
수소이온농도	5.8~8.6
탁도	4NTU 이하
대장균	200(개체수/100mL) 미만
유리잔류염소	0.4~4.0mg/L(염소소독 시)

□ 수질검사 방법 및 주기

- 가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함
- 나.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수행, 수질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야 함

2. 관리 기준

- 가.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,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함
- 나.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 또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함
- 다.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소독하여야 함
- :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「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」을 충족하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·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함

- 라.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,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, 이용자 주의사항(음용 금지,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) 등을 게시하여야 함
- 마.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·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,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.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카드에 수질 검사결과, 초과 원인,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

□ 이용시 주의사항

- 시설용수 음용 금지
- 피부병,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,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금지
- 물속에 침을 뱉는 행위 및 대소변 금지
- 물놀이장의 경우 신발을 벗고 이용하거나, 별도 아쿠아슈즈 착용
- 영유아는 수영장용 기저귀 착용,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금지
- 음식물 및 이물질(유리, 뽕족한 물건 등) 반입금지
- 애완동물 진입금지
-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자제하고,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
-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 주의
- 물놀이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깨끗한 물로 씻을 것

□ 안내판 예시



☐ 수소이온농도(pH)

- 물의 산성,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
- pH는 살균 소독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
- 낮은 pH는 시설의 부식을 일으키며 높은 pH는 배관 스케일을 형성함

☐ 탁 도

- 점토, 콜로이드입자, 조류, 미생물, 부유물질 등에 의한 물의 탁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질 항목임

☐ 대장균

- 주로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지만 항원형 O-157 등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
-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소화기계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임

☐ 유리잔류염소

-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(HOCl)과 차아염소산 이온(OCl^-)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의미하며,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